

2013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금번 예산안은 2013년 10월 7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0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임.

I. 제안이유

- 7.11~7.15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과 연도중 보조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경상경비 절감액, 기타 필수예산 반영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2013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79,71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7,91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908백만원이 증액된 321,588백만원, 특별회계는 4,009백만원이 증액되어 58,131백만원임.
- 세입예산은
 -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지방세 509백만원, 세외수입 11,384백만원, 지방교부세 2,528,백만원, 재정보전금 1,08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8,40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488백만원, 지방교부세 △1,500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21백만원임
- 세출예산은

- 일반회계 정책사업비 31,991백만원(예비비 포함),
재무활동 2,033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1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836백만원, 재무활동 3,176백만원,
행정운영경비 △3백만원 임.

Ⅲ. 검토내용

1. 총 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구분	제2회 추경액		제1회 추경액	증감액	
	예산액	%		증감액	%
합계	379,719,701	100	341,802,649	37,917,052	11.09
일반회계	321,588,219	84.69	287,680,317	33,907,902	11.79
상수도공기업	17,056,800	4.49	16,721,800	335,000	2.00
소계	41,074,682	10.82	37,400,532	3,674,150	9.82
주택사업	42,927	0.01	30,000	12,927	43.09
기반시설부담금	97,727	0.03	97,727	0	0
의료보호기금	683,941	0.18	655,629	28,312	4.32
발전소주변지역	45,071	0.01	45,071	0	0
수질개선	33,679,343	8.87	30,535,832	3,143,511	10.29
공유재산관리	3,230,000	0.85	2,740,000	489,400	17.86
농공단지조성	3,295,673	0.87	3,295,673	0	0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 총 379,719,701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1.09%인 37,917,052천원이 증액되었고,
- 이중 일반회계는 321,588,219천원으로 33,907,902천원이

-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58,131,482천원으로 4,009,150천원이 증액되었음.
 - 전체회계별 예산규모 면에서는 일반회계가 84.69%, 특별회계는 15.31%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2.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분		제2회 추경액		제1회 추경액	증감액	
		예산액	%		증감액	%
합계		321,588,219	100	287,680,317	33,907,902	11.79
자체수입	소계	51,101,542	15.89	39,210,735	11,890,807	30.3
	지방세	22,539,298	7.01	22,030,710	508,588	2.31
	세외수입	28,562,244	8.88	17,180,025	11,384,219	66.26
의존수입	소계	264,304,677	84.11	242,289,582	22,015,095	9.08
	지방교부세	169,047,914	52.57	166,519,752	2,528,162	1.52
	재정보전금	6,340,000	1.97	5,260,000	1,080,000	20.53
	국도비보조금	88,916,763	27.65	70,509,830	18,406,933	26.11

-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21,588,219천원으로 1회추경 예산대비 11.79%인 33,907,902천원으로 1회추경대비
 - 자체수입은 51,103,542천원으로 지방세 수입 22,539,298천원, 세외수입 28,564,24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 의존수입은 270,484,677천원으로 지방교부세 169,047,914천원, 재정보전금 6,340,000천원, 국·도비보조금 88,916,763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이를 세목별로 보면

① 지방세수입

(단위: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액		제1회 추경액	증 감	
	예 산 액	%		증 감 액	%
합 계	22,539,298	100	22,030,710	508,588	2.31
보 통 세	22,089,298	98.00	21,580,710	508,588	2.36
목 적 세	-	-	-	-	-
과년도수입	450,000	2.00	450,000	-	-

② 세외수입

(단위: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액		제1회 추경액	증 감	
		예 산 액	%		증감액	%
합 계		28,564,244	100	17,180,025	11,384,219	66.26
경상적 세외 수입	소 계	6,618,065	23.17	6,067,050	551,015	9.08
	재산임대수입	600,987	2.10	746,980	△145,993	△19.54
	사용료수입	783,094	2.74	718,412	64,682	9.00
	수수료수입	1,001,909	3.50	828,200	173,709	20.97
	사업수입	2,044,095	7.16	2,183,000	△138,095	△6.33
	징수교부금수입	1,147,170	4.01	970,458	176,712	18.21
	이자수입	1,040,000	3.66	620,000	420,000	67.74
임시적 세외 수입	소 계	21,946,179	76.83	11,112,975	10,833,204	97.48
	재산매각수입	10,000	0.01	10,000	-	-
	잉여금	17,754,295	62.16	8,074,000	9,680,295	119.9
	이월금	595,750	2.09	205,575	390,175	189.8
	전입금	37,927	0.13	-	37,927	100
	예탁금및예수금	1,000,000	3.5	1,000,000	-	-
	융자금원금수입	150,000	0.53	150,000	-	-
	부담금	822,000	2.88	822,000	-	-
	기타수입	1,326,207	4.64	601,400	724,807	120.5
	지난년도수입	250,000	0.89	250,000	-	-

③ 지방교부세

(단위: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액		제1회 추경액	증 감	
	예산액	%		증 감액	%
계	169,047,914	100	166,519,752	2,528,162	1.52

-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 지방교부세 총액은 1회추경 대비 1.52%인 2,528,162천원이 증액된 169,047,914천원임.
 -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2.57%를 차지하고 있음.

④ 재정보전금

(단위: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액		제1회 추경액	증 감	
	예산액	%		증 감액	%
계	6,340,000	100	5,260,000	1,080,000	20.53

-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시·군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시·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97%를 차지하고 있으며,
 - 재정보전금의 총규모는 6,340,000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0.53%인 1,080,000천원이 증액되었음.

⑤ 보조금

(단위: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액		제1회 추경액	증 감	
	예산액	%		증 감액	%
합 계	88,916,763	100	70,509,830	18,406,933	26.11
국고보조금	69,165,533	77.79	55,803,014	13,362,519	23.95
도비보조금	19,751,230	22.21	14,706,816	5,044,414	34.30

- 보조금 88,916,763천원은 1회추경 대비 26.11% 증액된 것으로
 - 이중 국고보조금은 1회추경 대비 13,362,519천원이 증액된 69,165,533천원 이고,
 - 도비보조금은 1회추경 대비 5,044,414천원이 증액된 19,751,230천원임.

□ 세출예산

①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액		제1회 추경액	증 감	
	예 산 액	%		증 감 액	%
합 계	321,588,219	100	287,680,317	33,907,902	11.79
정책사업비	256,444,808	79.74	224,453,886	31,990,922	14.25
재무활동비	24,636,778	7.66	22,603,902	2,032,876	8.99
행정운영경비	40,506,633	12.60	40,622,529	△115,896	△0.29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추경 대비 11.79%인 33,907,902천원이 증가한 321,588,219천원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 정책사업비는 1회추경 대비 14.25%인 31,990,922천원이 증액된 256,444,808천원이고,
 - 재무활동비는 1회추경 대비 8.99%인 2,032,876천원이 증액된 24,636,778천원이며,
 - 행정운영경비는 1회추경 대비 0.29%인 115,896천원이 감소된 40,506,633천원임.

② 기능별 구분

(단위:천원)

구분	제2회 추경액		제1회 추경액	증 감	
	예산액	%		증 감액	%
합계	321,588,219	100	287,680,317	33,907,902	11.79
일반공공행정	25,340,178	7.88	25,036,619	303,559	1.21
공공질서및안전	14,634,114	4.55	13,140,409	1,493,705	11.37
교육	2,409,786	0.75	2,315,786	94,000	4.06
문화및관광	29,340,143	9.12	25,921,926	3,418,217	13.19
환경보호	26,356,329	8.20	24,899,912	1,456,417	5.85
사회복지	38,342,467	11.92	36,581,000	1,961,467	5.36
보건	3,972,195	1.24	3,715,694	256,501	6.90
농림해양수산	62,244,793	19.35	60,715,191	1,529,602	2.52
산업중소기업	7,441,404	2.31	6,679,506	761,898	11.41
수송및교통	23,077,129	7.18	13,102,896	9,974,233	76.12
국토및지역개발	44,978,437	13.99	31,930,363	13,048,074	40.86
예비비	2,744,611	0.85	3,018,486	△273,875	△9.07
기타	40,506,633	12.66	40,622,529	△115,896	△0.29

○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회추경예산 대비 1.21%가 증액된 25,340,178천원이고,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회추경예산 대비 11.37%가 증액된 14,634,114천원이며,
- 교육분야는 1회추경 대비 4.06%가 증액된 2,409,786천원이며
- 문화관광분야는 13.19%가 증액된 29,340,143천원이고,
- 환경보호분야는 5.85%가 증액된 26,356,329천원이며,
- 사회복지분야는 5.36%가 증액된 38,342,467천원임.
- 보건분야는 6.90%가 증액된 3,972,195천원이며,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52%가 증액된 62,244,793천원이고,
-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1.41%가 증액된 7,441,404천원임.
- 수송및교통분야는 76.12%가 증액된 23,077,129천원이며,
-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40.86%가 증액된 44,978,437천원이고,
- 예비비는 9.07% 감액된 2,744,611천원이며,
- 기타 각 부서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0.29%가 감액된 40,506,633천원이 편성되었음.

③ 성질별 구분

(단위:천원)

구분	제2회 추경액		제1회 추경액	증 감	
	예산액	%		증 감액	%
합계	321,588,219	100	287,680,317	33,907,902	11.79
인건비	36,022,986	11.20	35,868,642	154,344	0.43
물건비	23,798,419	7.40	23,038,969	759,450	3.30
경상이전	73,731,385	22.93	69,924,511	3,806,874	5.44
자본지출	166,575,463	51.80	137,393,242	29,182,221	21.24
보전재원	7,680,000	2.39	7,680,000	0	0
내부거래	10,329,007	3.21	10,485,777	△156,770	△1.50
예비비및기타	3,450,959	1.07	3,289,176	161,783	4.92

○ 성질별로 보면,

- 인건비는 1회추경 대비 0.43% 증액된 36,022,986천원이고,
- 물건비는 1회추경 대비 3.30% 증액된 23,798,419천원이며,
- 경상이전비는 73,731,385천원으로 1회추경대비 5.44%증액되었음.
- 자본지출은 1회추경대비 21.24% 증액된 166,575,463천원이고,
-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분야는 156,77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 예비비 및 기타는 1회추경대비 4.92% 감액된 3,450,959천원임.

3. 특 별 회 계

(단위: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액		제1회 추경액	증 감 액	
		예 산 액	%		증감액	%
합	계	58,131,482	100	54,122,332	4,009,150	7.41
	상수도공기업	17,056,800	30.11	16,721,800	335,000	2.00
기타 특별 회계	소 계	47,074,682	69.89	37,400,532	3,674,150	9.82
	주택사업	42,927	0.01	30,000	12,927	43.09
	기반시설부담금	97,727	0.01	97,727	0	0.00
	의료보호기금	683,941	1.18	655,629	28,312	4.32
	발전소주변지역	45,071	0.01	45,071	0	0.00
	수질개선	33,679,343	57.94	30,535,832	3,143,511	10.29
	공유재산관리	3,230,000	5.56	2,740,600	489,400	17.86
	농공단지조성	3,295,673	5.18	3,295,673	0	0

□ 세입예산

-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58,131,482천원으로 1회추경대비 7.41%인 4,009,150천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로 살펴보면,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회추경대비 2%인 335,000천원이 증액된 17,056,800천원이고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회추경대비 12,927천원이 증액된 42,927천원이며,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회추경대비 28,312천원이 증액된 683,941천원이며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143,511천원이 증액된 33,679,343천원이며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489,400원이 증액된 3,230,000천원
이고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변동없음.

□ 세출예산

- 특별회계 총규모는 세입예산규모와 마찬가지로 1회추경대비
7.41%인 4,009,150천원이 증액된 58,131,482천원으로
회계별 증액원인을 살펴보면,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300,000천원이며
 -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 2008년 도암하수관거 정비사업 526,702천원.
 - 2011년 댐상류 하수도 확충사업 2,586,336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것으로 분석됨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 균유지 집단화사업 361,400천원
 - 수석의 전당 부지매입 230,000천원임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 의료급여사업 반환금 25,182천원임.

4. 종합검토의견

- 2013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79,719백만원으로 1회추경예산 341,802백만원보다 37,917백만원(11.09%)이 증액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321,588백만원으로 1회추경예산 대비 33,908백만원(11.79%)
 - 특별회계는 58,131백만원으로 1회추경예산 대비 4,009백만원(7.41%)이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 1회추경예산과 비교할 때 지방세는 508백만원이 증가한 22,539백만원
세외수입은 11,384백만원이 증가한 28,562백만원,
지방교부세는 2,528백만원이 증가한 169,048백만원,
재정보전금은 1,080백만원이 증가한 6,340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8,406백만원이 증가한 88,917백만원임.
 - 지방세는 보통세인 재산세와 담배소비세를 반영한 것이며
 - 세외수입은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9,680백만원을 추가 반영한 것이며
 -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은 1회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임.
 - 그중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012년도 정산분 566백만원,
특별교부세 880백만원(유동~약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500,
노람뜰레포츠장 정비 300), 부동산교부세 2012년도 정산분 273백만원, 부동산 교부세 800백만원 등임

- 재정보전금 1,080백만원은 재정보전금 500백만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580백만원이며
- 국고보조금 등은 수해복구사업 및 재해복구사업이 대부분으로 계상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 일반공공행정(303백만원, 1.2%), 교육(94백만원, 4.0%),환경보호(1,456백만원, 5.8%), 사회복지(1,961백만원, 5.4%),보건(256백만원, 6.9%), 농림해양수산(1,529백만원, 2.52%)분야 등은 10% 이내의 소폭 증가가 있었던 반면,
- 공공질서 및 안전(1,493백만원, 11.4%), 문화및관광(3,418백만원, 13.2%), 산업중소기업(762백만원, 11.4%), 수송 및 교통(9,974, 백만원, 76.1%), 국토 및 지역개발(13,048백만원, 40.9%)분야 등은 10%이상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증가되었음.
- 부서별로 비교해 보면
 - 주민생활지원과(1,752백만원, 4.9%), 문화관광과(2,498백만원, 15.7%), 경제체육과(2,103백만원, 17.9%), 도시주택과(999백만원, 4.4%), 농업기술센터(1,170백만원, 2.8%) 등은 증가한 반면
 - 행정지원 부서인 기획감사실(△328백만원, △1.6%), 종합민원과(△30백만원, △3.0%), 자치행정과(△64백만원, △0.1%),환경과(△100백만원,△0.5%)등은 감소하였음.
 - 특히 안전건설과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 25,735백만원으로

62%가 증가한 반면 산림과는 정책숲가꾸기사업 취소로 인해 1,593백만원이 감소하여 12,6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 8종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1회추경예산 54,122백만원보다 4,009백만원(7.41%) 증액된 58,131백만원임.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300백만원 등이며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89백만원을 증액하여 균유지 집단화사업, 수석의 전당 부지매입 등을 반영하였음.
- 수질개선특별회계 3,143백만원은 2008년도 도암하수관거정비사업과 2011년도 댐상류 하수도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나타났음.

○ 세입예산 중 순세계 잉여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 17,754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금회 추경에 9,680백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음.
- 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면 초과세입금 7,157백만원, 집행잔액 11,872백만원(정책사업 10,672, 행정운영경비 1,159, 재무활동40)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 차액분인 초과세입금이 무려 7,157백만원이 발생한 부분은 세입추계에 정확을 기하지 못했다고 판단됨

○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과 당초예산 대비 50%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을 보면

- 미탄면 복지회관 목욕탕 시설보수 등 신규사업은 75개사업(별첨1)에 4,499백만원 이며
- 50%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별첨)은 축제장 시설유지 및 수선비 등 13개 사업에 1,436백만원 임.
- 신규 자체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사업착수가 늦어져 사업추진의 부실은 물론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당초예산 편성시 투자우선 순위를 충분히 검토하여 가용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된 예산편성으로 연초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당초예산 편성 이후 여건 및 계획 변동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 금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수해복구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은 집행기관의 사업설명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